

개정

김제제일유치원 규칙(안)

2024. 6. 28.

김제제일유치원

김제제일유치원 규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유치원의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김제제일유치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유치원은 김제제일유치원이라 한다. (이하 ‘본원’이라 함).

제3조(위치) 본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193번지에 둔다.

제2장 교육연한·학기·휴업일

제4조(교육연한) 본원의 교육연한은 1~3년으로 한다. 단, 취학 유예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학기) 본원의 학기는 두 학기로 나누되,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,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휴업일)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경일 및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
2. 여름·겨울 및 학년말 방학
3. 개교기념일
4. 재량휴업일 : 수업일수를 이수한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.
5. 임시휴업일 :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
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

제7조(학급편제) 본원의 학급 수는 동일연령으로 구성, 6학급으로 편성한다.

제8조(유아정원) 본원의 유아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급당 유아수용지표에 의한다.

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·수업 운영방법

제9조(교육내용) 본원의 교육내용은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, 김제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운영계획을 근거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유치원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·운영한다.

제10조(수업일수 등)

-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본원의 수업일수는 년 최소 18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.
1.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(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수업일수의 10분의 1
 2. 법 제31조제1항·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: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
- ② 원장은 「유아학비 지원계획」과 「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」에 준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(교외체험학습 등).

제11조(수업운영 방법)

- ①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수업운영을 한다.
1. 교육과정 : 1일 4~5시간 이내의 유아·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
 2. 방과후 과정: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, 해당연도 관할청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으로 운영한다.
- ②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운영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생활지도

제12조(생활지도의 범위)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.

1.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
2.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·사용
3.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
4.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5.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
6.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
7.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
8.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
9.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
10. 그 밖에 교무회의에서 정하는 사항

제13조(훈육)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

1.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
2.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

3. 유아 또는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거나 교육활동 침해소지가 있는 물품

제14조(기타)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4조 제2항 및 교육부의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와 관할청의 지침에 준한다.

제6장 입학 · 전입학 및 전출 · 재입학 · 편입학 · 휴학 · 퇴학

제15조(입학자격)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.

제16조(입학시기) 3월초에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, 결원이 발생할 경우나 정원의 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다.

제17조(전입학 및 전출) 거주지 이전 등 사유에 의해 전입학 및 전출을 할 수 있다. 단, 정원 범위 내에서 전입학할 수 있다.

제18조(재입학) 우리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.

제19조(편입학) 다른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들어올 수 있다.

제20조(휴학) 학년도를 기준으로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할 수 있다.

제21조(퇴학) 학년도 시작 이후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퇴학할 수 있다.

제7장 졸업 및 수료

제22조(졸업)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(학년도 종료일)까지 5세 교육과정 3분의 2 이상을 이수한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
제23조(수료)

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 교육과정 3분의 2 이상을 이수한 3, 4세 유아와 취학유예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. 단, 3, 4, 5세 유아 중 학년도 시작 이후 수업일수 최종일(학년도 종료일)까지 이수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유아의 수료를 처리한다.

제8장 기타의 비용

제24조(기타의 비용)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종 교육비를 징수 할 수 있다.

1. 기타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징수 할 수 있다.
2.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9장 규칙 개정

제25조(규칙 개정절차)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원 교직원 협의 후 개정 내용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부 칙

1.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8.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9.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0.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1. 이 규칙은 2018년 4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2.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3. 이 규칙은 2022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4. 이 규칙은 2023년 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5.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6.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7. 이 규칙은 2024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8. 이 규칙은 2024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